고용노동부	보 도 자 료	휴먼뉴딜 한국판뉴딜	
보도일시	2021. 12. 31.(금) 조간 *인터넷 2021. 12. 30.(목) 12:00 이후 / 총 4쪽		
담당부서	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	과 장 손필훈 사무관 권기준	044-202-8804 044-202-8814

< 본 자료는 http://www.moel.go.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산재 예방! 사각지대 없도록 지자체도 함께해요

■ **고용부, 지방자치단체의 산재 예방 활동을 위한 매뉴얼 발간**

■ **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자치단체장에 종사자 보호 의무 부여**

□ 지방자치단체의 산재 예방 활동 책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('21.11.19.)되고, 중대재해처벌법 시행('22.1.27.)이 임박함에 따라,

○ 고용노동부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해당 법령을 쉽게 이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, 관내 사업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「**지자체 산재 예방 매뉴얼**」을 발간했다.

* 고용노동부(http://www.moel.go.kr) 정책자료-정책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

□ 매뉴얼에는 △ 지자체가 **발주하는 공사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**, △ **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**하기 위한 지자체 **활동**, △ **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준비사항** 등의 내용이 수록됐다.

1 지자체 발주공사·수행사업 산재 예방

○ **5년간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현장**에서 발생한 **사망사고는 232건**으로 **전체 건설업 사망사고의 약 10%를 차지**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.

* (지자체 발주공사 사망사고) 16년 44명 → 17년 54명 → 18년 52명 → 19년 36명 → 20년 46명

○ 이에 따라, 매뉴얼에는 지자체가 **발주하는 공사와** 폐기물 운반 작업, 녹지 정비사업 등 지자체가 직접 주민을 위해 **수행하는 사업**별로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**안전관리를 해야 하는지 관련 법령과 구체적인 안전관리 방법을** 제시한다.

2 관내 사업장 산재 예방

○ 산안법 시행과 관련하여 **일반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·보건**을 위해 지자체가 수행해야 하는 **산재 예방 활동 방안도 포함했다.**

○ 지자체에서 제정할 **산재 예방 조례의 표준안, 지역별 산재 예방 대책의 구성안**, 관내 사업장에 대한 **안전보건 교육·홍보** 방안, 업종별* **사업장 지도점검 방법** 등을 자세히 수록했다.

* 제조업, 농업, 광업, 어업, 배달업, 택배서비스업, 외국인노동자 사업장 등

<산업안전보건법('21.11.19. 시행)>

제4조의 2(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,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.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의 3(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, 교육,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지자체 역할과 준비사항

○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**경영책임자인 자치단체장**에게 **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**할 새로운 **의무**가 부여됨에 따라,

○ 매뉴얼에는 지자체에서 **안전보건 담당자**를 두고, **전담 조직을 구성**하여 **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·운영**하는 등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**법령의 주요 내용과 준비 방법을 제시했다.**

□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

○ "**농림어업과 중소 영세사업장** 등 **산재예방의 사각지대를 없애기**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**광역 및 기초 지자체**의 **역할이 필수적**"이라고 강조하는 한편,

○ “**지자체**의 **산재 예방 활동 책무** 관련 **산업안전보건법이** 시행되고, 내년 1월부터 **중대재해처벌법이** 시행되는 것에 맞춰 **지자체**도 자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산재 예방을 위해서 **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내년에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의 더 큰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**”이라며

○ “또한, 지자체와의 협업과 정보교류를 위해 **지자체 산재예방 협의회**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**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**해 나가도록 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* 제1차 지자체 산재예방 협의회는 지난 10월 28일 개최한 바 있음

<붙 임>「지자체 산재예방 매뉴얼」목차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권기준 사무관(☎044-202-8814)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
붙 임 「지자체 산재 예방 매뉴얼」 목차

Ⅰ. 발주공사·수행사업 산재예방

구분	내용
1. 발주공사 산재예방	■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 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■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■ 추락사고 예방관리
2. 수행사업 산재예방	■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의 정의와 의무 ■ 도급사업 진행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■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■ 도급에 따른 산재예방 조치사항 ■ 수행사업별 산재예방 조치사항 *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작업 관리, 산림·녹지정비 작업 관리, 노후 하수관로 개·보수공사 관리, 양돈농가 질식사고 예방 관리, 근로자 건강관리
3. 산재 발생 시 관리 방안	■ 산재 발생보고, 재발방지계획 수립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조치해야 하는 사항

Ⅱ. 관내 사업장 산재예방

구분	내용
1. 산재예방 조례 표준안	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라 지자체가 제정할 수 있는 산재예방 조례 표준안
2. 산재예방 종합대책 표준안	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라 지자체가 수립해야 하는 산재예방 대책 표준안
3. 사업장 지도 점검 방안	■ 업종별 안전관리 방안 * 제조업, 농업, 광업, 어업, 배달업(퀵서비스업), 택배서비스업,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
4. 사업장 교육·홍보 방안	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라 관내 사업장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 방안

Ⅲ.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지자체 역할과 준비사항

□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지자체 준비사항

-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과 관련 사항 등